



제1819호
2025. 12. 19.(금)

◇ 발행인 : 종로구청장
◇ 편 집 : 홍보과
◇ 전 화 : 2148-1677

1.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종로구보

[조 례]

- 제178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제178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제178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제1790호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제179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 39
- 제1792호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제179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49
- 제179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54
- 제179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 제179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64
- 제179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9
- 제179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74

○ 제179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 제180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84
○ 제180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88
○ 제180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규 칙]

○ 제92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100
○ 제92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14
○ 제92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22
○ 제927호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132
○ 제92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141
○ 제92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60

[훈 령]

○ 제149호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	174
--	-----

[고 시]

○ 제191호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 고시.....	178
○ 제192호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80

[공 고]

○ 제1775호 공시송달공고.....	
----------------------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78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하되, 재위촉 할”을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u>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 ----- <u>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u>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위촉·운영하는 입법·법률고문 제도에서 임기 연장 및 재위촉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와 특정인과의 유착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자문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새로운 법률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규정은 명확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자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
- 나. 본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임기 중인 입법·법률고문에게는 개정된 제5조의 임기 규정이 적용되며, 연임 횟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스마트행정과”를 “디지털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 38호

1중 “스마트정책”을 “디지털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1호, 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제40호, 제39호 및 제4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2호 중 “공공와이파이 운영·확충”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종전의 제44호) 중 “운영”을 “구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6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제43호부터 제49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9호 중 “자연생태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담장녹화”를 “벽면녹화”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행정과”를 “디지털행정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u>스마트행정과</u> ,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4조(행정국) ① ----- ----- <u>디지털</u> <u>행정과</u> ----- --.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37. (생략)	1. ~ 37. (현행과 같음)
38. 스마트도시 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u>스마트정책</u> 추진에 관한 사항	38. ----- ----- <u>디지털행정</u> ----- -----
39. <u>스마트정책 민관산학 협력 및 공모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0. <u>스마트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1. (생략)	40. (현행 제41호와 같음)
42. <u>공공와이파이 운영·확충에 관한 사항</u>	42. <u>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u> -----
43. (생략)	39. (현행 제43호와 같음)
44. 행정정보시스템 <u>운영</u>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1. ----- <u>구축</u> ----- -----
45. <u>정보통신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6. ~ 52. (생략)	43. ~ 49. (현행 제46호부터 제52호까지와 같음)
제8조(도시관리국) ① (생략)	제8조(도시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② -----

장한다. 1. ~ 18. (생 략) 19. 개발제한구역 및 <u>자연생태보전</u> <u>지역</u> 관리에 관한 사항 20. (생 략) 21. 조경사업(학교공원화, 옥상녹화, <u>담장녹화</u>, 수경시설 등)에 관한 사 항 22. ~ 32. (생 략) 제9조(복지교육국) ① (생 략)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u>3. ~ 30.</u> (생 략)	-----. 1. ~ 18. (현행과 같음) 19. ----- <u>생태·경관보</u> <u>전지역</u> ----- 20. (현행과 같음) 21. ----- -----<u>벽면녹화</u> ----- ----- 22. ~ 32.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교육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u>통합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4. ~ <u>31.</u> (현행 제3호부터 제30호까 지와 같음)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 업무 용어를 정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안 제4조)

- 스마트행정과 → 디지털행정과

나. 부서 업무 정비사항 개정(안 제4조, 제8조)

- 용어 정비(담장녹화 → 벽면녹화) 등

다.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업무 신설(안 제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형성”을 “형성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구역내에 거주하거나”를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을 “선정”으로, “위촉하되”를 “해야 하고”로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를 “고문은”으로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 및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때”

를 “ 경우”로 “해촉”을 “구청장에게 해촉을 의뢰”로 한다.

제24조를 제5장에 제29조로 한다.

제4장(제24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동별 자치회관 간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위원 중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경비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협의회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등 위·해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선정 또는 위·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장·위원·고문, 협의회 회장·부회장, 감사·사무국장 등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별표]

사용료 등

(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회 1시간	50㎡ 미만	10,000원	· 부대시설포함 · 평일야간, 주말, 휴일 25% 가산
		50㎡ 이상 ~ 100㎡ 미만	15,000원	
		100㎡ 이상 ~ 150㎡ 미만	20,000원	
		150㎡ 이상 ~ 200㎡ 미만	25,000원	
		200㎡ 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	50,000원	1명 1프로그램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100 퍼센트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0 퍼센트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50 퍼센트	◦ 65세 이상 어르신	종로구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1명당 2강좌에 한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u>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u>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u>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u> 조례
제7조(운영)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7조(운영)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u>
제16조(기능) ① (생략) 1. ~ 3. (생략) 4. 지역공동체 <u>형성</u> 에 관한 사항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u>형성 및 지역특화사업</u> -----
5. (생략) ② · ③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생략)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u>구역내에 거주하거나</u>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u>위촉하여야 한다.</u>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u> ----- ----- ----- ----- ----- ----- <u>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u>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신설>

장이 위촉한다.

③ -----선정-----

-- 해야 하고-----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 및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0조(해촉) ① ----- 당연직이 아닌 고문-----

경우----- 구청장에게 해촉을 의뢰-----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신 설>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을 위하여 각 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신 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동별 자치회관 간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의

<신 설>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위원 중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운영 경비 등) ① 구청장은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협회 세칙) 이 조례에서 정
한 것 이외에 협회 운영과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세칙
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
다.

제29조(시행규칙 등) -----

[별 표]

사용료 등 (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생 략)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분	감면 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생략)	(생 략)	
수강료	100 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	
		◦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신 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50 퍼센트	◦ 65세 이상 어르신	생 략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별표]

사용료 등

(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현행과 같음)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분	감면 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생략)	(생 략)	
수강료	100 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	
		◦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50 퍼센트	◦ 65세 이상 어르신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조례 개정 TF)에서 제안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치활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교육 또는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실시 규정 신설(안 제7조제9항 신설)
- 나.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제4호)
- 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은 동장이 선정·추천·의뢰하여 구청장 위·해촉으로 변경(안 제17조 및 제20조)
- 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정·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17조제5항)
- 마.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장제24조~제28조)
- 바. 두 자녀를 둔 가정인 경우 수강료 50%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 불부
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
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0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제26조제5항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영 제74조제2항”을 “영 제75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4호 중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제72조제4항 단서 중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다목 중 “제106조”를 “제107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를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로,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

표에 따라”를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로,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

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

(제5조 관련)

유 형 순 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미과세대상자	65세 이상이면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 청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 <u>민</u> <u>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제12조의2 -- ----- ----- ----- -----.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을 민원업무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여 전자민원 업무를 관리한다.	② ----- ----- -----「 <u>민원</u> <u>처리에 관한 법률</u> 」 제12조 ----- ----- ----- -----.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2. (생 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 6. (생 략)

⑥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
-----내용연수-----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4. ~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70조의2(물품의 무상대부) ① 영 제74조제2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생략)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 ⑤ (생략)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물품의 무상대부) ① 영 제75조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 내용연수-----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u>내구년수</u>가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④ ----- ----- --. ----- -<u>내용연수</u>----- ----- ----- -----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2항,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 -----

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나. (생략)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체납처분

라. ~ 자. (생략)

⑥ (생략)

제8조(지급) ① (생략)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생략)

제9조(환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1. (현행과 같음)

2.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_____

제 107 조 -----

라. ~ 자.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
--	--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 -----. 4. (현행과 같음) ② ----- ----- -----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할 수 있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 4. (현행과 같음)
---	---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②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 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개정 2004.12.31., 2015.10.2., 2019.7.12.>					19.7.12.>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 (제5조 관련)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 (제5조 관련)				
유 형 순 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 민	유 형 순 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 민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미과세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 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미과세대상자	65세 이상이면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 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제명 변경, 인용 조문 반영 등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및 타 조례 인용 제명·조문 정비 등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오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어 온 가게”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상호로 맥(脈)을 이어 오거나, 가업을 승계하여 대(代)를 이어 온 가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가게를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 등) ① 이어 온 가게는 구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창업부터 동일 상호와 동일 영업주로 운영해 온 가게
2.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여 2대 이상 동일 상호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
3.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② 이어 온 가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절차 및 일정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③ 이어 온 가게 선정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2. 이어 온 가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어 온 가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영 안정 지원이 필요한 가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증서 등의 교부)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로 선정된 가게에 대하여 인

증서 또는 지정 현판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이어 온 가게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의 역사·문화·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기준법」 또는 업종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업종 변경, 가업 승계 단절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대표자가 자진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

제11조(의견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어 온 가게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해당 가게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종로구는 오랜 기간 한 업(業)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가게들이 전통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특성을 가진 도시로, 이러한 가게를 발굴·선정하고 지원·예우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세대 간 계승과 지역 공동체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한 “이어 온 가게” 용어 규정(안 제2조)
- 나. 공개 모집 등 이어 온 가게의 선정 기준(안 제3조)
- 다. 이어 온 가게 지원 등(안 제4조)
- 라. 이어 온 가게 우선 지원 대상(안 제5조)
- 마. 이어 온 가게 인증서 또는 지정 현판 교부(안 제6조)
- 바.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제8조·제9조)
- 사. 이어 온 가게 선정취소 등(안 제10조·제1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무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가. 칼·가위 같이, 우산 등 생활용품 수리

나.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무상 서비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 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다</u> <u>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무상 서비</u> <u>스 일자리 창출 사업</u> <u>가. 칼· 가위 같이, 우산 등 생</u> <u>활용품 수리</u> <u>나.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u> <u>을 위한 무상 서비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5. (생 략)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무상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제5호)

- 칼·가위·우산 등 생활용품 수리를 사업 내용으로 명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이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3.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

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라.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다. 노동조합 또는 필수노동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적용대상(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근로조건·근무환경 개선 사업,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바.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79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모집의 방법으로”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u>공개모집의 방법으로</u>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 ----- ----- ----- <u>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 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u>	3. <u>영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 위탁 관련 규정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 공백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 관리 방식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유료화장실 운영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관리기준의 수준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 시 공개모집 방식의 제한을 완화함(안제6조제1항).
- 나. 유료화장실 운영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상위법령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장치
2. 상(上)방향 직수설비,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소화 및 확산 방지설비
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부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이전
4.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이미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 공기를 신속히 접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이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우리 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화재 감지·경보장치, 소화·확산 방지설비 등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설 지원
라. 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4세”를 “39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위해 4년마다”를 “위해”로,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지원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u>34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정의) ----- ----- ----- ----- ----- 3 9세 -----. 다만, <u>「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u>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u>4년마다</u>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가족돌봄 및 부양, 근로,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 ----- 위해 ----- ----- ----- ----- <u>수 있으며, 지원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u>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u>

<u>제7조 ~ 제9조</u> (생략)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 <u>제8조 ~ 제10조</u>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조례가 '25.5.19. 일부개정
 -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하여 지원범위를 확대
- 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대상 연령 범위 확대(안 제2조)
- 나. 실태조사 주기("4년마다") 삭제 및 담당부서 재량에 따른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 업무의 위탁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79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 ‘장애인’, ‘장애인범죄’, ‘장애인 거주시설’ 등 주요 용어 정의

나.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 규정

다.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체계 마련(안 제4조)

- 신고체계, 심리상담·법률자문, 사례관리, 재발 방지 대책 등

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안 제5조)

-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시설 발견 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규정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바.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조성 노력 규정(안 제8조)

사.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명시(안 제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79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일반음식점을”을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소(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판 또는 인증서 수여

2.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홍보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생 략) 1. (생 략) 2. <u>일반음식점을</u> 통한 급식지원 <u><신 설></u> <u><신 설></u>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아동급식카드 협력업소(일반음 식점, 편의점 등)를</u> 통한 급식 지원 3. <u>도시락 지원</u> 4. <u>부식 지원</u>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1조(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에 참여한 업소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현판 또는 인증서 수여</u> <u>2.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회 공헌활동 홍보</u> <u>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돌봄 체계를 다각화하고, 아동의 음식 선호도와 영양 균형을 고려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며, 나아가 지역 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켜 아동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및 부식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나. 아동급식 무료 지원 등에 참여한 업소에 대한 인증 현판 수여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이동권 확보와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이동수단”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필요 시 학생 이동수단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수단의 지원 및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수단의 지원은 학교 간 형평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복수의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기관·법인·단체 등 민간에 위탁
2. 구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직접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종로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이동권 확보와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안 제4조)
- 라. 지원기준 및 내용 (안 제5조~안 제6조)
- 마. 시행규칙 (안 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물막이판

나. 역류방지 밸브

다. 비상벨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가건물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기준)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6조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구민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5년 이상의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

나.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6조)

- 침수 방지지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세부 사항을 정함

다.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대상(안 제7조)

-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예우 및 지원)”을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헌혈 한 차례당 1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정보를 홍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종로구 홈페이지 등 구 운영 인터넷·온라인 정보매체
2. 종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전광판, 게시판 및 옥외광고물
3. 종로구에서 발간·발행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용이하다

고 판단되는 방법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예우 및 지원) (생략)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헌혈 한 차례당 1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나 지원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정보를 홍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종로구 홈페이지 등 구 운영 온라인 정보매체
	2. 종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전광판, 게시판 및 옥외광고물
	3. 종로구에서 발간·발행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및 장기등

현행	개정안
	<u>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용이 하다고 판단되는 방법</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헌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 이익으로서 헌혈 문화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가운데, 오히려 종로구의 헌혈 장려 시책이 전무(全無)하므로 헌혈하는 종로구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 시책 마련을 통해 헌혈 장려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헌혈 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헌혈 한 차례당 1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예우나 지원

나.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정보매체 규정 신설(안 제7조)

- 홈페이지 등 구 운영 인터넷·온라인 정보매체
- 전광판, 게시판 및 옥외광고물, 간행물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지원과장·자치행정과장·홍보과장·스마트행정과장·민원여권과장”을 “행정지원과장·자치행정과장·홍보과장·디지털행정과장·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스마트행정과)”를 “(디지털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행정과장”을 “디지털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스마트정책”을 “디지털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스마트정책”을 “IT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스마트 사업”을 “디지털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6호) 중 “스마트정책”을 “디지털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스마트정책·기술”을 “디지털정책·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8호)중 “스마트정책”을 “디지털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9호) 중 “정보화교육”을 “디지털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11호) 중 “로봇,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를 “로봇 등 디지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21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 제20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19호) 중 “정보화 사업”을 “IT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를 삭제한다.

15. 통계계획 수립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행정전산장비 및 상용SW 구매·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행정전화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7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40호까지로 한다.

제25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를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로 한다.

제27조제7호 중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1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제32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31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건축사무관으로”를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로, “지방지적사무관으로”를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로 한다.

제32조제7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제33조제4호 중 “총괄”을 “총괄(정비구역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항”을 “사항(정비구역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용검사”를 “사용검사(정비구역 제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9호) 중 “부과”를 “부과(정비구역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12호) 중 “멸실신고”를 “멸실신고(정비구역 제외)”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중전의 제16호) 중 “관리”를 “관리(정비구역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중전의 제18호)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정비구역 제외)”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중전의 제19호)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정비구역 제외)”로 한다.

제34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제23호 및 제24호로 한다.

7.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8. 산지·산림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9.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12. 야생동물 포획 관련 업무

15.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6.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

17. 산지 및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18.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22. 가로화단 및 결이화분 등 꽃모 식재

제37조제11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한다.

12.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13.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

14.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민관협업체계 운영

15. 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신규 발굴 및 협약

16. 돌봄SOS사업 운영

제39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제43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를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로, “지방토목사무관으로”를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로 한다.

제48조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부서별 전결사항의 3호 행정국 라목 “스마트행정과”를 “디지털행정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행정지원과장·자치행정과 장·홍보과장·스마트행정과장·민 원여권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국) ----- ----- <u>행정지원과장·자치행정과 장·홍보과장·디지털행정과장·민 원여권과장</u> ----- -----.
제9조(<u>스마트행정과</u>) <u>스마트행정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u>디지털행정과</u>) <u>디지털행정과장</u> -----.
1. <u>스마트정책</u> 추진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u>디지털행정</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스마트도시협의회</u>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4. <u>스마트정책</u> 리빙랩 운영에 관한 사항	6. <u>IT분야</u> ----- --
5. <u>스마트 사업</u> 공모에 관한 사항	7. <u>디지털사업</u> -----
6. <u>스마트정책</u>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8. <u>디지털사업</u> ----- ---
7. <u>스마트정책·기술</u> 동향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9. <u>디지털정책·기술</u> ----- -----
8. <u>스마트정책</u> 관련 직원 및 주민 교 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10. <u>디지털정책</u> ----- -----
9. 구민 및 직원 대상 <u>정보화교육</u> 운 영에 관한 사항	11. ----- <u>디지털교육</u> - -----
10. <u>스마트사업</u>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인공지능, <u>로봇</u> , <u>사물인터넷</u> 등	5. ----- <u>로봇 등 디지털</u>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추진

12. ~ 14. (생략)

<신설>

15. (생략)

16. (생략)

17. (생략)

18.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신설>

<신설>

19.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0. · 21. (생략)

<신설>

22. 행정전화 운영 관리

23. (생략)

24. 통계계획 수립 및 총괄

25.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제24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26.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12. ~ 14. (현행과 같음)

15. 통계계획 수립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3. (현행 제16호와 같음)

17. (현행과 같음)

18.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행정전산장비 및 상용SW 구매 ·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IT사업 -----

21 · 22. (현행 제20호 및 제21호와 같음)

23. 행정전화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삭제>

<삭제>

제24조(환경과) -----
-----.

1. ~ 25. (현행과 같음)

<삭제>

27. ~ 41. (생략)

제25조(도시재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미래도시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주차관리과장·청사건립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미래도시추진과) 미래도시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운영
8. ~ 10. (생략)

제28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 (생략)

<신설>

31. ~ 37. (생략)

제31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도시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26. ~ 40. (현행 제27호부터 제41호까지와 같음)

제25조(도시재생국)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

-----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

-----.

제27조(미래도시추진과) -----
-----.

1. ~ 6. (현행과 같음)
7.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8. ~ 10. (현행과 같음)

제28조(교통행정과) -----
-----.

1. ~ 30. (현행과 같음)
31.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32. ~ 38. (현행 제31호부터 제37호까지와 같음)

제31조(도시관리국)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

-----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

-----지방

다.

제32조(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설>

7. ~ 23. (생략)

제33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총괄

5. (생략)

6.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
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검사

8.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까지의 공사
감독

9. 건축허가 취소, 고발 및 과태료 분
과

10. · 11. (생략)

12. 건축물 해체, 착공 및 멸실신고

13. ~ 15. (생략)

시설사무관(지적)으로 -----.

제32조(주택관리과) -----
-----.

1. ~ 6. (현행과 같음)

7.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건축
인·허가 및 유지관리

8. ~ 24. (현행 제7호부터 제23호까
지와 같음)

제33조(건축과) -----
-----.

1. ~ 3. (현행과 같음)

4. ----- 총괄(정
비구역 제외)

5. (현행과 같음)

6. -----
----- 사항(정비구역 제외)

7. ----- 사용검사(정비구역
제외)

<삭제>

8. ----- 분
과(정비구역 제외)

9. · 10.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
음)

11. ----- 멸실신고
(정비구역 제외)

12. ~ 14. (현행 제13호부터 제15호
까지와 같음)

16. 부설주차장 허가 및 관리

17. (생략)

18.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등 안전 관리

19.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20. · 21. (생략)

제34조(도시녹지과) 도시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승인 허가
<신설>

7. (생략)

8. 산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

9. 산림 훼손 및 산림관련 규정 위반 행위 단속

10. 사방조림사업 및 지도

11. (생략)

12. 벌채 허가 및 부정임산물 단속

13. (생략)

14. 임야 내 토석채취 허가

15. 수렵 지도

16. 임야 절개지 단장 및 미화

15. ----- 관리(정비구역 제외)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17. ----- 안전 관리(정비구역 제외)

18. ----- 안전관리(정비구역 제외)

19. · 20. (현행 제20호 및 제21호와 같음)

제34조(도시녹지과)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 행위 단속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산지·산림 내 행위허가 및 불법 행위 단속

9.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삭제>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야생동물 포획 관련 업무

11. (현행 제13호와 같음)

<삭제>

1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6.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유해야생

17.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

<신 설>

18. ~ 20. (생 략)

<신 설>

21. 거리환경 미화 및 노변 꽃 심기

22. · 23. (생 략)

24. 조림 및 육림사업

25. 야생조수 보호단속

26. · 27. (생 략)

제37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 25. (생 략)

2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동물 관리

17. 산지 및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18.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19. ~ 21. (현행 제18호부터 제20호
까지와 같음)

22. 가로화단 및 걸이화분 등 꽃모
식재

<삭 제>

13. · 14.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23. · 24. (현행 제26호 및 제27호와
같음)

제37조(복지정책과) -----
-----.

1. ~ 10. (현행과 같음)

17. ~ 31. (현행 제11호부터 제25호
까지와 같음)

11. (현행 제26호와 같음)

12.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13.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대상자 모
니터링 총괄

14.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민관협
업체계 운영

15. 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신규 발굴

<신 설>

27. 1인가구 지원사업 개발·운영 및
홍보

28. ~ 31. (생 략)

제39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돌봄SOS센터 운영 관리

13. ~ 27. (생 략)

제43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
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
고, 안전도시과장·가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
방토목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
로 보한다.

제48조(보건소) 소장은 개방형 직위로
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및 협약

16. 돌봄SOS사업 운영

<삭 제>

32. ~ 35. (현행 제28호부터 제31호
까지와 같음)

제39조(어르신복지과)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2. ~ 26. (현행 제13호부터 제27호
까지와 같음)

제43조(도시안전국)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

-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
----- 지방시설사
무관(토목)으로 -----.

제48조(보건소) -----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반영과 부서별 업무 정비를 통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안 제5조, 제9조)

– 스마트행정과 → 디지털행정과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급 명칭 변경(안 제25조, 제31조, 제43조, 제48조)

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24조, 제28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환경과 → 교통행정과)

라. 부서 간 업무 이관(안 제32조, 제33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건축 인·허가 등(건축과 → 주택관리과)

마. 부서별 업무 신설·삭제·변경 등 정비(안 제9조, 제27조, 제34조)

바.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업무 신설 및 이관(안 제37조, 제3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칙 제92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명)

직렬별	기 관 별	총 계	구분청	보건소	동	구의회 사무국
총 계		1,310	884	108	287	31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1,301	880	108	287	26
3급		1	1			
부이사관		1	1			
4급		9	7	1		1
서기관		5	4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3	3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개방형4호, 보건소장)		1		1		
5급		64	37	9	17	1
행정		43	26	1	15	1
행정·사회복지		4	2		2	
행정·임기제 행정 (개방형5호, 감사담당관)		1	1			
행정·토목		1	1			
행정·시설(토목·건축)		3	3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의무·간호·임기제		1		1		
의무·약무		1		1		
의무·간호·보건·의료기술		1		1		
시설(토목)		1	1			
시설(건축)		1	1			
시설(지적)		1	1			
임기제 의무(의사)		5		5		
6급		267	199	18	46	4
행정		153	108	5	37	3
세무		15	15			
사회복지		11	7		4	
행정·세무		8	8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녹지		4	4			
행정·시설(일반토목)		5	5			
행정·시설(건축)		4	4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건축·일반토목)		3	3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보건·공업(일반화공)·환경		1	1			
행정·공업(일반화공·일반기계)		1	1			
행정·약무·보건·의료기술		1		1		
속기		1				1

기 관 별 직렬별	총 계	구분청	보건소	동	구의회 사무국
공업(일반기계)	2	2			
공업(일반전기)	3	3			
공업(일반화공)	1	1			
녹지·시설(건축)	1	1			
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약무	1		1		
간호	4		4		
간호·보건	2		2		
시설(일반토목)	9	9			
시설(건축·일반토목)	1	1			
시설(건축)	6	6			
시설(지적)	3	3			
운전	3	3			
기계운영·전기운영·농림운영	3	3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방호(방호)	3	3			
임기제 보건(역학조사)	1		1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1		1		
임기제 보건진료(한의사)	1		1		
임기제 시설(교통문제 연구)	1	1			
임기제 시설(국가유산)	1	1			
7급	401	284	32	69	16
행정	199	137	7	50	5
세무	29	29			
전산	3	3			
사회복지	31	16		15	
행정·전산	2	2			
속기	3				3
방호(방호)	2	2			
공업(일반기계·일반전기)	4	4			
공업(일반전기)	2	2			
공업(일반화공)	2	2			
녹지	5	5			
녹지·시설(건축)	1	1			
수의	1	1			
보건	6	1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3		3		
약무	1		1		
약무·간호	1		1		
간호	12		12		
환경	2	2			
시설(일반토목)	10	10			
시설(일반토목·건축)	12	12			
시설(건축)	13	13			
시설(지적)	5	5			
방송통신	3	3			

기 관 별 직 렬 별	총 계	구 본 청	보 건 소	동	구 의 회 사 무 국
위생	1	1			
시설관리	8	7			1
운전	17	13		4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임기제 행정(대외교류)	1	1			
임기제 행정(미술관관리)	1	1			
임기제 행정(관광기획 홍보)	1	1			
임기제 행정(촬영)	2	1			1
임기제 행정(보도 및 촬영)	1				1
임기제 행정(빅데이터 분석)	1	1			
임기제 행정(정책지원)	5				5
임기제 행정(학예사)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시설(교통문제 연구)	1	1			
임기제 시설(도시디자인 전문)	1	1			
임기제 보건(자가격리모니터링)	1		1		
임기제 약무(약사)	1		1		
임기제 방송통신(스마트도시사업전략)	1	1			
8급	399	265	41	90	3
행정	150	92	4	52	2
세무	20	20			
전산	4	4			
사회복지	46	16		30	
방호(방호)	4	4			
공업(일반기계)	3	3			
공업(일반기계·일반전기)	5	5			
공업(일반기계·일반화공)	1	1			
공업(일반화공)	2	2			
공업(일반기계)·시설(일반토목)	1	1			
녹지	7	7			
녹지·시설(토목)	1	1			
보건	10	4	6		
의료기술	6		6		
간호	23		23		
시설(일반토목)	14	14			
시설(일반토목·건축)	13	13			
시설(건축)	12	12			
시설(지적)	10	10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3	23			
방재안전	1	1			
운전	25	16	2	7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3	1		1	1
임기제 행정(홍보)	2	2			
임기제 행정(기록물 관리)	1	1			
임기제 행정(사서)	2	2			

기 관 별 직렬별	총 계	구본청	보건소	동	구의회 사무국
임기제 행정(평생교육)	1	1			
임기제 행정(혁신교육지원센터)	1	1			
임기제 행정(옴부즈퍼슨)	1	1			
임기제 행정(아동학대조사)	1	1			
임기제 시설(교통전문)	1	1			
임기제 시설(도시디자인 전문)	1	1			
9급	158	85	7	65	1
행정	73	46	3	24	
세무	7	7			
전산	1	1			
사회복지	35			35	
공업(일반기계·일반전기)	4	4			
공업(일반화공)	1	1			
녹지	2	2			
시설(건축)	2	2			
의료기술	2		2		
시설(일반토목·건축)	8	8			
시설(지적)	2	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2	2			
방재안전	1	1			
운전	16	7	2	6	1
전문경력관(소계)	2	2			
가군	1	1			
비상대비·민방위	1	1			
나군	1	1			
비상대비·민방위	1	1			
별정직(계)	8	3			5
5급상당(소계)	2	1			1
행정·별정	2	1			1
6급상당(소계)	4	1			3
행정·별정(전문위원)	1				1
행정·별정	1				1
행정·별정(비서)	2	1			1
7급상당(소계)	2	1			1
별정(비서)	2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명)						(단위: 명)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청	보건소	동	구의회 사무국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청	보건소	동	구의회 사무국
총 계	1,310	884	108	287	31	총 계	1,310	884	108	287	31
일반직(계)	1,301	880	108	287	26	일반직(계)	1,301	880	108	287	26
4급	9	7	1		1	4급	9	7	1		1
서기관(행정)	5	4				서기관	5	4			
서기관(행정)또는 기술서기관(토목,건축)	3	3				서기관·과학기술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임기제 (개방형4호, 보건 소장)	1		1			과학기술서기관· 임기제 (개방형4호, 보건 소장)	1		1		
5급	64	37	9	17	1	5급	64	37	9	17	1
행정	44	26	1	16	1	행정	43	26	1	15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회복지	4	2		2	
7급	399	282	32	69	16	7급	401	284	32	69	16
시설관리	6	5			1	시설관리	8	7			1
8급	400	266	41	90	3	8급	399	265	41	90	3
사무운영	4	2		1	1	사무운영	3	1		1	1
9급	159	86	7	65	1	9급	158	85	7	65	1
시설관리	3	3				시설관리	2	2			
전문경력관(소계)	2	2				전문경력관(소계)	2	2			
가군	1	1				가군	1	1			
민방위·화생방	1	1				비상대비·민방위	1	1			
나군	1	1				나군	1	1			
민방위·화생방	1	1				비상대비·민방위	1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기능최퇴 분야의 감축 인력 재배치로 승진적체 해소 등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 반영과 시·구 전문경력관 직무 분야 일치로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관련 별표)

- 정원 총계 : 1,310명 (변동없음)
- 일반직 계 : 1,301명 (변동없음)
 - 5급 행정(동) : 16명 → 15명 (-1명)
 - 5급 행정·사회복지(동) : 1명 → 2명 (+1명)
 - 7급 시설관리(본청) : 5명 → 7명 (+2명)
 - 8급 사무운영(본청) : 2명 → 1명 (-1명)
 - 9급 시설관리(본청) : 3명 → 2명 (-1명)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급 명칭 변경(안 제2조 관련 별표)

- (현행) 기술서기관 → (개정안) 과학기술서기관

다. 전문경력관 직무 분야 통합(안 제2조 관련 별표)

- (현행) 민방위·화생방 → (개정안) 비상대비·민방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라 함은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평가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담당관, 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5.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점검 또는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계획의 수립

제5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6조(성과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한다.

제7조(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제8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중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현안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의 절차

제11조(평가계획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 기본방향 및 목적
2. 평가대상기관의 범위
3. 평가대상업무의 선정
4. 평가의 시기 및 방법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심의)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와 관계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7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인사,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및 보건소의 4급 이상 공무원
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

는 자동 해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24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 강화

- 현행 예산편성 이전 업무계획 수립으로 계획과 실행 간 괴리 발생
- 예산조정 이후 계획 수립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 강화

나. 중복적인 평가체계의 정비 필요성

- 주요업무시행계획을 폐지하고 ‘성과관리’로 통합 평가 실시
- 중복 평가 축소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

다. 평가 운영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체계·용어 정비

- 효율적이고 원활한 평가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 현행 규정의 불명확 · 중복 표현 개선 및 규칙 체계 전면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일정 변경(안 제5조)

- [현행] 8월 지침 시달, 9월 수립 → [개정안] 9월 지침 시달, 10월 수립

나. 주요업무시행계획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다. 성과관리 및 성과관리계획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 제6조)

라. 평가 운영 관련 규정 정비

- 정기평가 주기 변경(안 제9조) : [현행] 분기 → [개정안] 연 2회 이상
- 평가계획의 시달 기한 변경(안 제11조)
 - [현행] 해당 연도 2월말 → [개정안] 전년도 12월 31일
-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법 변경(안 제21조)
 - [현행] 위원 중 호선 → [개정안] 부구청장

마. 규칙 체계 정비 및 중복 규정 등 개선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

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정서식)

제6조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4.“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 ----- -----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 -----.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1조(입장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제한) ----- ----- ----- -----.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u>전염성</u> 질환이 있는 사람	1. ----- --- <u>감염성</u> -----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u>	<u>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u>환경보전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환경정책위원회</u> -----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u>환경보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2조(기능) ----- <u>환경정책위원회</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현행	개정안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고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u> 4. ~ 8. (생략) ② (생략)	제4조(근무요령)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u>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 구역에서 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 감사 및 <u>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u> 따른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저실적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6조(벌칙) ----- ----- ----- ----- -----.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 ----- ----- ----- ----- -----.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0조 -----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제명 변경, 인용 조문 반영 등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및 타 조례 인용 제명·조문 정비 등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 조사 또는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조사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 제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 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긴급세무조사”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않고 납세자로부터 장부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세목별조사”란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부분조사”란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세무조사의 관할

제6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구청장은 납세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인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 방법의 자문, 조사 인력의 지

원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을 하는 경우 세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사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자
2.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 확인받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다만,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5.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않고 세무조사가 유예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유예를 취소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유예기간 중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만, 당해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지방세 체납액(「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일반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조사 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방식) ① 구청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

되,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①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서면조사의 경우 최종 자료 제출일을 의미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

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제16조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조사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 진행

제18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그 설명

을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자의 권익 보호) ①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요구가 정당하지 않거나 이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등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장부나 관계 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장소)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시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 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7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28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구청장은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업무

제7장 보칙

- 제3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해 조사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수칙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확인·선정·인증받은 경우부터 한 차례만 적용한다. 다만 확인·선정·인증받기 전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다음연도부터 적용한다.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종로구청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종로구청장(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위 임 장

대 리 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	
	주소(사업장)			

연번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자격

※ 별지 작성 가능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종로구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생년월일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종로구청장 귀하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종로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법령 개정 사항 및 실제 세무조사 운영 여건 반영으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규칙 제4684호, 2025.1.20.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 지방세 세무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문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무조사 관련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진행절차 순으로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시·자치구간 협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6조)
 - 합동조사 정의 및 시·자치구간 조사사무 지원 근거 신설
- 다.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기선정 조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함(안 제9조)
- 라.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하고 유예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0조)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신설
 - 유예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범위에서 유예 가능
- 마. 법령 체계상 직접조사를 우선적으로 전제함(안 제13조)
 - 서면조사는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
- 바. 청렴서약서 작성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전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6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이하 “화가의 집”이라 한다.)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람료의 면제 및 할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할 때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소장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진위 여부 검토 및 적정 구입 가격 결정
3. 소장품의 불용, 수증에 관한 사항 자문
4. 그 밖에 소장품 수집에 대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미술 작품·자료 수집, 감정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소장품 수집 평가·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제6조(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가의 집 담당 업무 팀장이 한다.

제7조(소장품의 수증 및 기증)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의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화가의 집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열람 및 대여의 결정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 또는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화가의 집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소장품 대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소장품 대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자에게 대여 소장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요구해야 한다.

④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여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는 대여받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는 소장품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 대여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⑤ 대여자는 대여 소장품을 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대여자가 소장품을 본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화가의 집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소장품 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소장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처)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김창열 화가의 집 관람료

김창열 화가의 집 관람료

(제2조 관련)

구 분		관람료	
		개 인	단 체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5,000원	3,000원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3,000원	1,800원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2,000원	1,200원

기증 서약서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규격	비고

합계: 점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증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_____ (날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명: _____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기 증 증 서

기증자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증작품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		크기	
	작품사진			

상기 작품(자료)을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에 기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증하신 작품(자료)은 전시 및 연구 자료로서 귀중히 관리하고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장품 관리카드								
관리번호				현재위치				
				분류번호				
※ 사진 (세로10cm×가로 15cm)								
작가명			국적			출생연도		
						사망연도		
명 제					제작연도			
재 료 (기 법)					크기(cm)			
부 문					작품유형			
작 품 상 태 소 건								
종합소견		A(양호) B(보통) C(보존수복 필요) D(긴급 보존수복 필요)						

(뒷면)

취 득 일 시	년 월 일		가 격	취득가격	원
취 득 방 법	구 입 () 기 탁 ()	기 증 () 관리전환 ()		산정가격	원
소 장 이 력	소 유 자		기 간		사 유
	1.				
	2.				
	3.				
전 시 이 력					
작품 가격평가의 견					
작품수리 및 기록 등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비고(확인자)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명		성 명				
	주 소		연락처				
구 분	☐ 대여 ☐ 열람						
대여(열람) 작 품	관리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규격	비고
대여(열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열람) 사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대여 소장품 인수증

대여작품	관리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	규격	비고
대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여조건	1.						
	2.						
	3.						
	4.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 나. 관람료 징수·할인 절차,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기증 절차, 대여 및 불용 처리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도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관람료 규정, 면제·할인 절차 (안 제1조 ~ 제3조)
- 나.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절차 (안 제4조 ~ 제6조)
- 다. 소장품 수집·관리·대여 규정 (안 제7조 ~ 제12조)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령 제149호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제1 항에 통장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 항----- ----- -----.
제2조(지급대상) 수당 등은 「서울특 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으 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 라 통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 「서울특별 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 등 불부합 훈령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불부합 훈령 정비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 경미한 사항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3호(2023.06.15.)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73호(2024.06.2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5-71호(2025.05.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우리 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대
 - 면 적 : 6,835.7㎡(대지 5,883.7㎡, 정비기반시설 95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지엘돈의문디앤씨주식회사 대표 황세훈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96, 2912호(논현동, 푸르지오시티)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일: 2025.12.19.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사항)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건축연면적 (㎡)
5,883.7	3,507.01	59.61	69,909.80	749.24	지하6층/ 지상21층	70	공동주택	36,056.39
							상가(근생)	4,642.65
							업무시설	26,869.47
							기부채납	2,341.29
							총계	69,909.80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계(연면적,㎡)	토지등소유자(㎡)	체비지(일반분양,㎡)	임대주택(㎡)	보류시설(㎡)	기부채납(㎡)
69,909.80	33,480.03	21,898.21	11,558.73	631.54	2,341.29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변경없음

6. 기타 관계도서 : 생략(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02-2148-2676). 끝.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4호(2024.11.14.)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공평 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종로구청장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	94,985.8	-	94,985.8	건설부 고시 제285호 (‘78.09.26)	-

나. 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 내역(㎡)		최초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제3지구	공평동 1번지 일대	4,386.3	4,215.5	293.9㎡ (6.70%)	건설부고시 제285호 (1978.09.26.)	재개발사업 (서고시 제2024-554호 (2024.11.14.)) -
변경	제3지구	공평동 1번지 일대	4,386.3	4,215.5	295.5㎡ (6.74%)		

■ 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제3지구	•공공시설 부담 면적 -기정) 토지 170.8㎡, 시설물 123.1㎡(환산부지) → 변경) 토지 170.8㎡, 시설물 124.7㎡(환산부지)	•지하층 연면적 증가에 따른 기부채 납 시설 면적 증가 및 공공시설 기 준 공사비와 부지가액 변경에 따른 환산부지 면적 변경

I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정비기 반시설 등	합 계		94,985.8	-	94,985.8	100.0	-
	소 계		22,317.6	-	22,317.6	23.5	-
	도 로		18,147.9	-	18,147.9	19.1	-
	공 원		2,909.7	-	2,909.7	3.1	-
	광 장		728.8	-	728.8	0.8	-
	공공공지		531.2	-	531.2	0.6	-
획지	소 계		72,677.7	-	72,677.7	76.5	-
	철거형	1, 2, 4지구	7,900.1	-	7,900.1	8.3	-
		3지구	4,215.5	-	4,215.5	4.4	-
		5지구	3,578.0	-	3,578.0	3.8	-
		6지구	2,918.6	-	2,918.6	3.1	-
		12지구	3,284.5	-	3,284.5	3.5	-
		14지구	2,087.5	-	2,087.5	2.2	-
		15, 16지구	9,263.2	-	9,263.2	9.8	-
		17지구	4,614.6	-	4,614.6	4.9	-
		18지구	5,192.5	-	5,192.5	5.5	-
		19지구	5,007.9	-	5,007.9	5.3	-
	수복형	인사동길지구(A1~A22)	4,788.8	-	4,788.8	5.0	-
		태화관길지구(B1~B10)	1,481.0	-	1,481.0	1.6	-
		인사동길이면지구(C1~C27)	6,406.0	-	6,406.0	6.7	-
		삼일로지구(D1~D3)	1,200.0	-	1,200.0	1.3	-
		공원인접지구①(E1~E3)	255.0	-	255.0	0.3	-
		공원인접지구②(F1)	1,051.3	-	1,051.3	1.1	-
		송동교회지구(G1)	2,881.0	-	2,881.0	3.0	-
		H1~H8	982.7	-	982.7	1.0	-
		I1~I3	791.3	-	791.3	0.8	-
		수복형공동개발지구	2,772.9	-	2,772.9	2.9	-
		소단위공동개발지구	1,995.8	-	1,995.8	2.1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지역	합 계	94,985.8	-	94,985.8	100.0	-
	일반상업지역	94,985.8	-	94,985.8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문화지구	인사동·관훈동·공평동· 건지동·낙원동·경운동 일대	175,743 (4,386.3)	- (-)	175,743 (4,386.3)	서울시고시 제2002-141호 (‘02.04.23)	-

주) ()는 공평구역 제3지구 내의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9.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당초 공평구역 부담률 유지 : 20.2% 이상 (완료지구의 신축시 5.5% 이상 부담)
- 완료지구 신축시에는 구역 내 잔여 정비기반시설과 해당지역에 필요한 시설(건축물 등)로 5.5% 이상 추가 부담

Ⅲ.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86.3	-	4,386.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70.8	-	170.8	3.9	-
	경관광장	170.8	-	170.8	3.9	기부채납
획 지	소 계	4,215.5	-	4,215.5	96.1	-
	획지1	4,215.5	-	4,215.5	96.1	-

주)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지역	합 계	4,386.3	-	4,386.3	100.0	-
	일반상업지역	4,386.3	-	4,386.3	100.0	-

주)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정비사업비(추산액)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추정비례율 = (총수입-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추정 비례율	[단위 : 천원]							
	■ 추정비례율 : 107.30%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726,125,776 - 431,269,683) / 274,783,605 × 100 = 107.30%							
	구분			금액(천원)				
	총수입	근생시설	일반분양	-				
			1)조합원분양	17,220,466				
		업무시설	일반분양	-				
			1)조합원분양	708,905,310				
	총지출			432,269,683				
종전자산 총액			274,783,605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보정률(255%)								
- 보정률 : 인근 거래사례, 감정평가선례와 개별공시지가의 격차율을 고려하여 결정								
※ 건물 : 원가법 (최저잔가율 15%)								
※ 집합건물 : 인근 거래사례, 감정평가선례 등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약식 감정평가액 기준								
-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에 층별/위치별 효용 등을 고려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사업비				
				-5%	-2.5%	0%	2.5%	5%
	변동률		평균단가 (만원/3.3㎡)	11,400	11,700	12,000	12,300	12,600
	분양가 (일반분양 기준)	5%	3,570	128.36%	124.44%	120.52%	116.59%	112.67%
		2.5%	3,485	121.76%	117.83%	113.91%	109.99%	106.06%
		0%(기준)	3,400	115.15%	111.23%	107.30%	103.38%	99.46%
		-2.5%	3,315	108.55%	104.62%	100.70%	96.77%	92.85%
		-5%	3,230	101.94%	98.02%	94.09%	90.17%	86.24%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권리가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업무시설		전용 1,025.4㎡	264.5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7.30%)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환급)		
근린 생활시설		지상1층 (전용 66㎡)	12.2억					
		지하1층 (전용 66㎡)	3.69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360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	-	47,400 (51.49)	'90.10.19	-

주) ()는 공평구역 제3지구 내의 면적임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경관광 장	인사동 188-7 일대	728.8 (170.8)	-	728.8 (170.8)	서울시고시 제2013-388호 (13.11.21)	-

주) ()는 공평구역 제3지구 내의 면적임

5.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 계획 : 변경

구분	지구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 반시설면 적 (㎡)	건축물 기부채 납 (전시관)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 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 부담 면적 (㎡)	순 부담 률 (%)	비고
기정	공평구 역	4,386.3	4,215.5	170.8	123.1	-	-	293.9	6.70	5.5% 이상 (완료지구 재개발시)
변경	제3지구	4,386.3	4,215.5	170.8	124.7	-	-	295.5	6.74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주1)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정]

▶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량 : 293.9㎡(6.70%)

① 정비기반시설 : 170.8㎡(경관광장)

②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 -

③ 건축물 기부채납 : 123.1㎡(지상1층 ~ 지상2층)

- 건축물 환산 면적 : 75.2㎡ / 토지지분면적 : 47.9㎡ (전시관, 연면적 794.16㎡)

- 도입시설(지분 및 건축물은) 종로구로 귀속되며, 종로구청장이 운영·관리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전시관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전시관(건축물 기부채납) 설치계획]

구분	계산값	비고
① 부지면적	4,215.5㎡	•확지면적
② 전체 건축 연면적	69,827.44㎡	-
③ 공공기여 연면적	794.16㎡	-
공공기여 규모	지상 1층 ~ 지상2층	-
④ 표준건축비	4,373,636원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적용(전시·박물관 신축비용 적용)
⑤ 설치비용	3,473,367,054원	•③ × ④
⑥ 부지가액	46,200,000원	•2023년 평균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⑦ 환산부지면적	123.1㎡	•④ + ⑥
① 건축물 환산면적	75.2㎡	•⑤ / ⑥
② 토지지분면적	47.9㎡	•③ / ② × ①
도입용도 (지상1층 ~ 지상2층)	794.16㎡	•종로구로 귀속되며, 종로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전시관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 전시관(건축물 기부채납)의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주관부서와 협의 거쳐 최종결정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경우 해당 표준건축비를 적용

[변경]

▶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량 : 295.5㎡(6.74%)

① 정비기반시설 : 170.8㎡(경관광장)

②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 -

③ 건축물 기부채납 : 124.7㎡(지상1층 ~ 지상2층)

- 건축물 환산 면적 : 75.9㎡ / 토지지분면적 : 48.8㎡ (전시관, 연면적 812.66㎡)

- 도입시설(지분 및 건축물은) 종로구로 귀속되며, 종로구청장이 운영·관리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전시관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전시관(건축물 기부채납) 설치계획]

구분	계산값	비고
① 부지면적	4,215.5㎡	•획지면적
② 전체 건축 연면적	70,189.37㎡	-
③ 공공기여 연면적	812.66㎡	-
공공기여 규모	지상 1층 ~ 지상2층	-
④ 표준건축비	4,436.364원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적용(전시·박물관 신축비용 적용)
⑤ 설치비용	3,605,255,273원	•③ × ④
⑥ 부지가액	47,480,000원	•2025년 평균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⑦ 환산부지면적	124.7㎡	•a + b
a 건축물 환산면적	75.9㎡	•⑤ / ⑥
b 토지지분면적	48.8㎡	•③ / ② × ①
도입용도 공공문화공간 (지상1층 ~ 지상2층)	812.66㎡	•종로구로 귀속되며, 종로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전시관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 전시관(건축물 기부채납)의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주관부서와 협의 거쳐 최종결정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경우 해당 표준건축비를 적용

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확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 변경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지구	소 계			293.9	증) 1.6	295.5
	인사동	173-4	경관광장	82.6	-	82.6
	인사동	173-6		5.6	-	5.6
	인사동	189-2		82.6	-	82.6
	공평동	1	전시관 (건축물기부채납)	123.1	증) 1.6	124.7

(2) 국공유지 매입대상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지목	면적(㎡)		관리청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인사동	173-4	도	82.6	82.6	기획재정부	전부
		173-6	도	5.6	5.6	기획재정부	전부
		189-2	대	82.6	82.6	기획재정부	전부

(3)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해당없음

(4) 사업시행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해당없음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공평구역 제3지구	4,386.3	-	4,215.5	공평동 1번지 일대	2	-	-	2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공평구역 제3지구	4,386.3	-	4,215.5	공평동 1번지 일대	업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50 이하	1,181.64 이하	140.0 이하	-
주택의 규모별	규모 및 건설비율									
심의의 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800%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생태 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초과 설치시 -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부여 (계수 2)	100%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1/2이상 초과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공익시설	특정층(최상층) 개방	특정시간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최상층 전망공간 조성				정률부여 (최대 50%)	25.76%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 상 우수등급 인증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총계	최대 200%						225.76% (적용 200%)		
	※ 전망대(최상층 개방)의 의무설치 및 개방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명기를 의무화하고, 불 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141조에 따르도록 함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① + ② = 1,181.64% 이하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① 공공시설 (경관광장, 문화 및 집회시설) 기부채납		$\frac{[(1.3 \times \alpha_{\text{토지}} \times \text{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1.2 \times \alpha_{\text{건축물}} \times \text{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div \text{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alpha_{\text{토지}} = \text{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div \text{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800\% \times [(1.3 \times 0.0525) + (1.2 \times 0.0180)]$ ($\alpha_{\text{토지}} = 0.0525$, $\alpha_{\text{건축물}} = 0.0180$)		71.91%		
②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 ÷ 대지면적)				800% × (1,632.1 ÷ 4,215.5)		309.73%		
• 공공시설확보면적										
구분		완화항목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공공시설 확보면적		경관광장				170.8		3.89		
	전시관				123.1		2.81			
계					293.9		6.70			
높이 완화	• 최고높이 : 140m 이하 적용 ① 기준높이 : 70m ② 개방형녹지 확보에 따른 높이 완화 · 완화높이 = [{적정건폐율 50% x (기준높이 + 20m)} / (80% - 개방형녹지율%)] = [50% x (70m + 20m)] / (80% - 45.82%) = 131.6m ③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완화높이 = [기준높이 x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x 1/2) / 대지면적}] = [70m x {(1,632.1㎡ x 0.5) / 4,215.5㎡}] = 13.6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인사동5길변 및 종로9길변 건축한계선(폭3m) 지정									
개방형녹지 계획	•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녹지 조성 • 일반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3m)으로 계획 • 공개공지 :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계선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동서측변 공개공지 지정									
차량출입에 관한 사항	• 주차출입구 : 대상지 북측도로변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공평구역 제3지구	4,386.3	-	4,215.5	공평동 1번지 일대	업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50 이하	1,161.88 이하	14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심의 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800%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생태 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초과 설치시 -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부여 (계수 2)	100%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1/2이상 초과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공익시설	특정층(최상층) 개방				특정시간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최상층 전망공간 조성		정률부여 (최대 50%)	25.76%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 상 우수등급 인증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총계	최대 200%							225.76% (적용 200%)		
	※ 전망대(최상층 개방)의 의무설치 및 개방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명기를 의무화하고, 불 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141조에 따르도록 함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① + ② = 1,161.88% 이하 적용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① 공공시설 (경관광장, 문화 및 집회시설) 기부채납	허용용적률 × [(1.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α건축물 = 공공시설 제공면적(건축물 환산부지)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800% × [(1.3×0.0527)+(1.2×0.0182)] (α토지 = 0.0527, α건축물 = 0.0182)		72.31%		
		②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 ÷ 대지면적)				800% × (1,525.88 ÷ 4,215.5)		289.57%		
		• 공공시설확보면적									
		구분	완화항목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공공시설 확보면적	경관광장				170.8		3.89			
		전시관				124.7		2.84			
		계				295.5		6.74			
	높이 완화	• 최고높이 : 140m 이하 적용 ① 기준높이 : 70m ② 개방형녹지 확보에 따른 높이 완화 · 완화높이 = [{적정건폐율 50% x (기준높이 + 20m)} / (80% - 개방형녹지율%)] = [{50% x (70m + 20m)} / (80% - 45.19%)] = 129.3m ③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완화높이 = [기준높이 x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x 1/2) / 대지면적}] = [70m x {(1,525.88㎡ x 0.5) / 4,215.5㎡}] = 12.6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인사동5길변 및 종로9길변 건축한계선(폭3m) 지정										
개방형녹지 계획	•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녹지 조성 • 일반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3m)으로 계획 • 공개공지 :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계선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동서측변 공개공지 지정										
차량출입에 관한 사항	• 주차출입구 : 대상지 북측도로변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0.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1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환용 계획 : 해당없음
15. 인구 및 주택의 수용 계획 : 해당없음
16.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17.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고시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

IV.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평동 1번지 일대	4,386.3	-	4,386.3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m ²)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386.3	-	4,386.3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386.3	-	4,386.3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철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개화동 360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	-	47,400 (51.49)	'90.10.19	-

주) ()는 공평구역 제3지구 내의 면적임

2) 광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광장	경관광장	인사동 188-7 일대	728.8 (170.8)	-	728.8 (170.8)	서울시고시 제2013-388호 ('13.11.21)	-

주) ()는 공평구역 제3지구 내의 면적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가구	면 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합계	4,215.5	-	4,215.5	100.0	-
	획지1	4,215.5	-	4,215.5	100.0	-

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제3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다.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3지구	• 50%이하	-

라.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3지구	• 기준 600% 이하 • 허용 800% 이하 • 상한 1,181.64% 이하	-
변경		• 기준 600% 이하 • 허용 800% 이하 • 상한 1,161.88%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3지구) : 변경없음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기정	녹지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100%	225.76% (적용 200%)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0%	
		전기차충전소 설치	20%	
	공익시설	특정층(최상층) 개방	25.76%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 조성	30%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20%	

※ 전망대(최상층 개방)의 의무설치 및 개방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명기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141조에 따르도록 함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3지구) : 변경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 제공	
기정	170.8㎡ (용적률 42.14%)	123.1㎡ (용적률 29.77%)	1,632.1㎡ (용적률 309.73%)	순부담률 6.70%
변경	170.8㎡ (용적률 42.14%)	124.7㎡ (용적률 30.17%)	1,525.88㎡ (용적률 289.57%)	순부담률 6.74%

마.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지구명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제3지구	- 기준높이 70m 이하, 높이 완화 75.2m - 최고높이 140.0m 이하	-
변경		- 기준높이 70m 이하, 높이 완화 71.9m - 최고높이 140.0m 이하	-

■ 높이완화 사항(제3지구)

구 분	높이 완화		비 고
	개방형 녹지확보	공개공지 초과 제공	
기정	61.6m	13.6m	높이 완화 75.2m (140.0m 이하 적용)
변경	59.3m	12.6m	높이 완화 71.9m (140.0m 이하 적용)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건축한계선	인사동5길변	• 폭 3m 지정	-
		종로9길변	• 폭 3m 지정	-

사.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공개공지	인사동5길변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서측변 개방형녹지와 연계한 공개공지 지정	-
	전면공지	인사동5길변, 종로9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면적	계획 내용	비 고
개방형녹지	제3지구	기정 1,931.44㎡	- 조성계획 : 지구 남측, 서측, 북측 녹지 조성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24.01.)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변경 1,905.13㎡		

* 개방형녹지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공공보행통로 및 선큰 등) 제외
 ※ 개방형녹지(선큰 포함)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의 형상(선큰 포함)은 조정 가능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인사동5길, 종로9길	• 이면도로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구	인사동5길변 1개소	• 간선부 및 이면부에서 건물내 출입을 위한 차량출입구 개설	-

4) 최상층 전망공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 고
전망 공간	최상층 (32층)	- 특정 시간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최상층 전망공간 조성 - 직접 연결 가능한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건물 외벽과 진입로 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	-

※ 전망대(최상층 개방)의 의무설치 및 개방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명기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141조에 따르도록 함

※ 최상층 전망공간에 대한 면적 등은 세부 설계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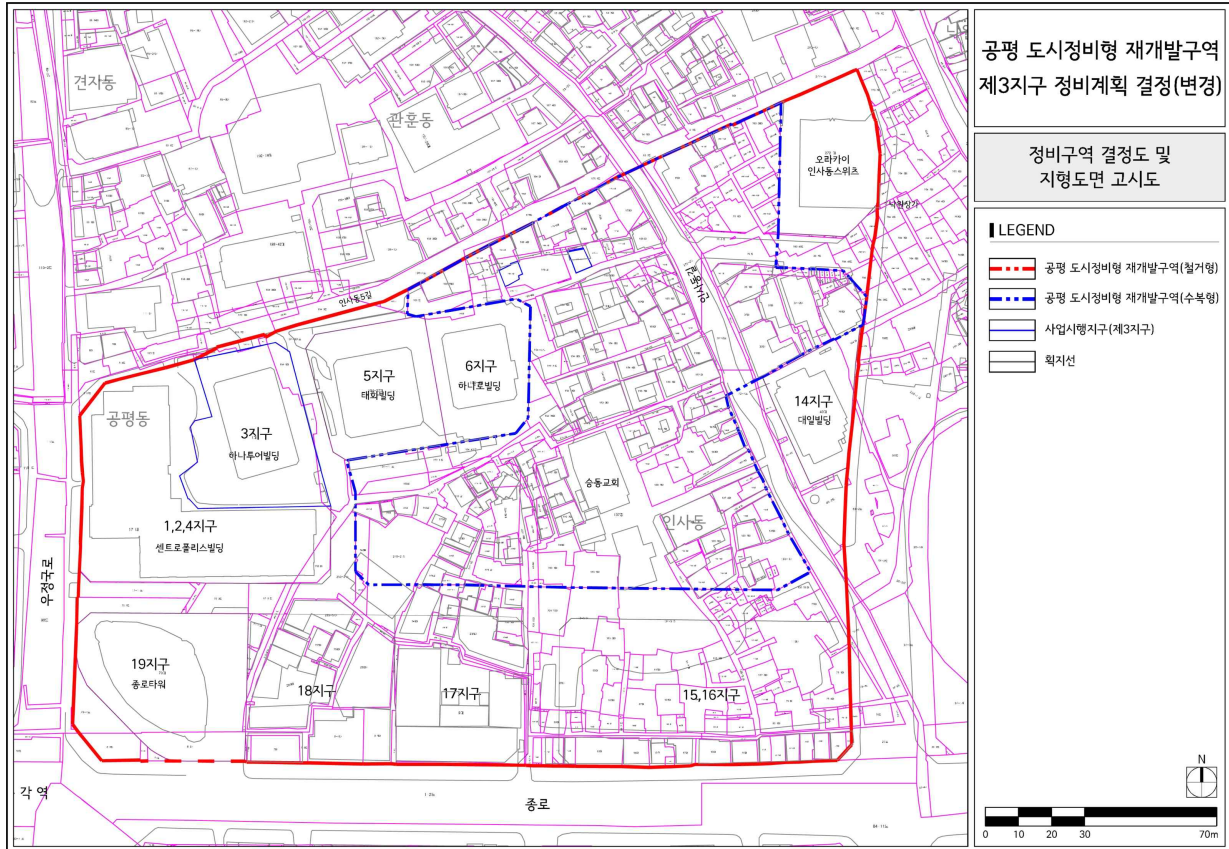
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VI.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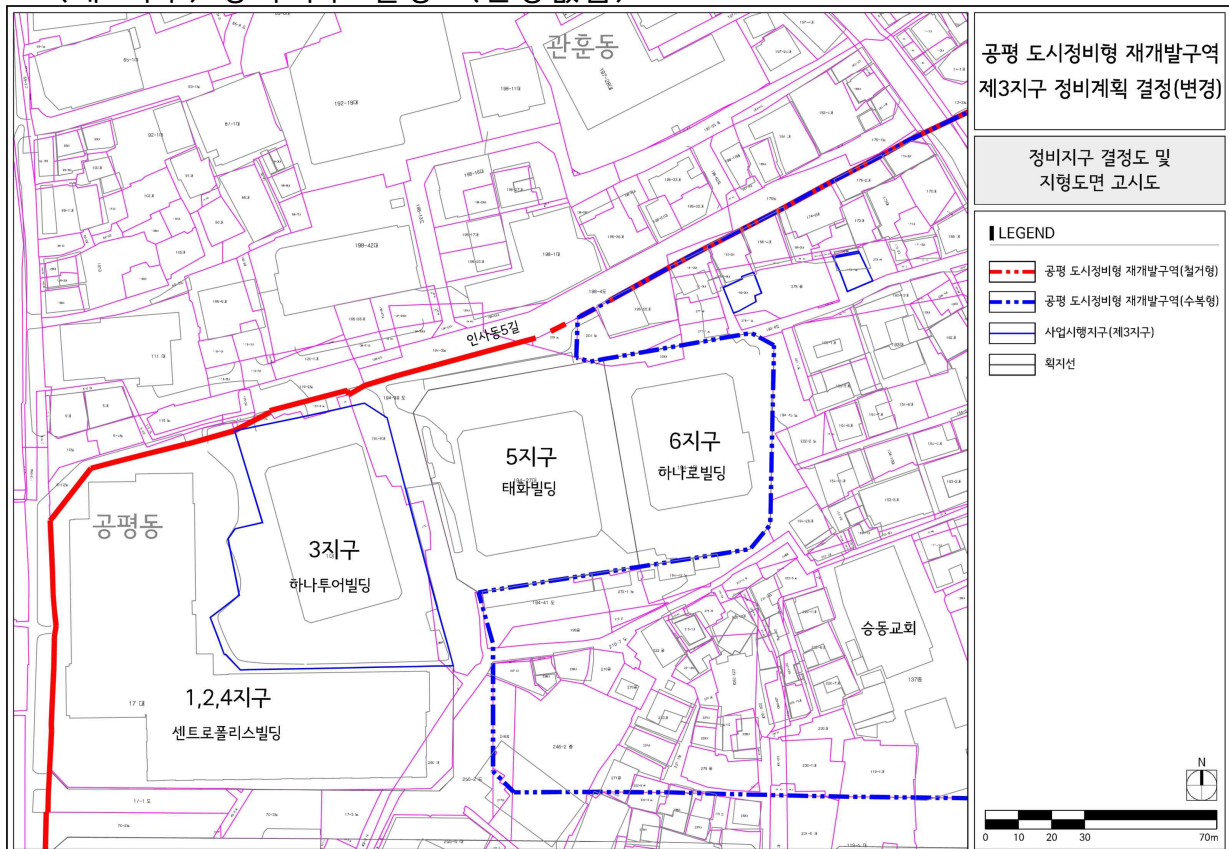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652) 및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7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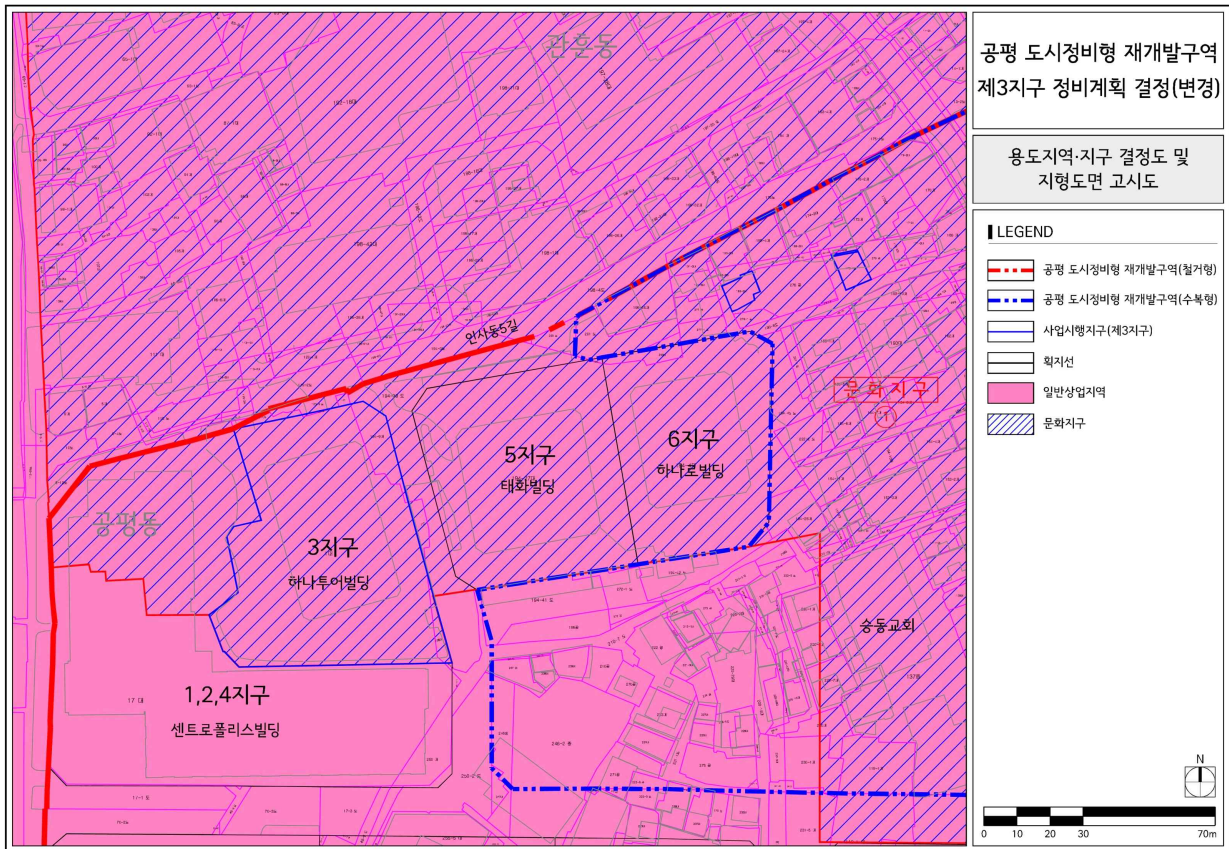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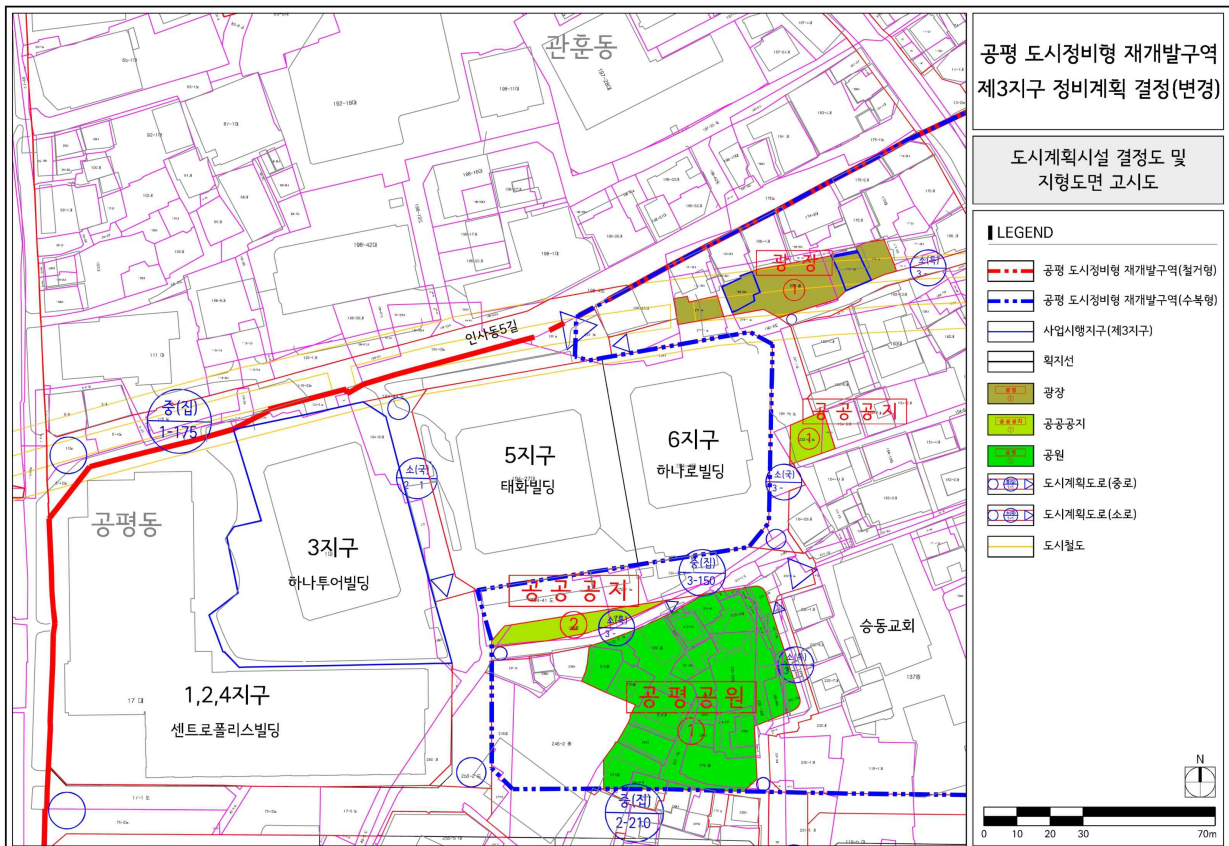
■ (제3지구) 정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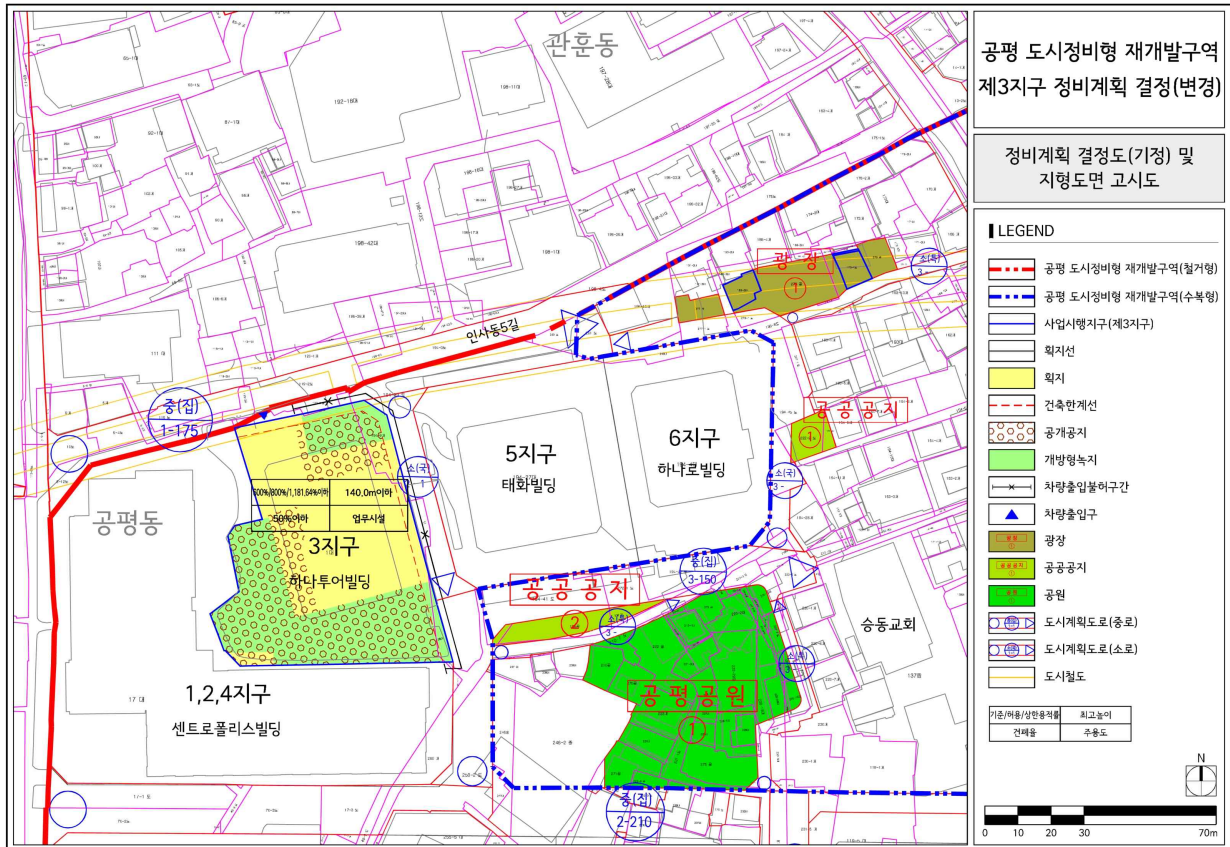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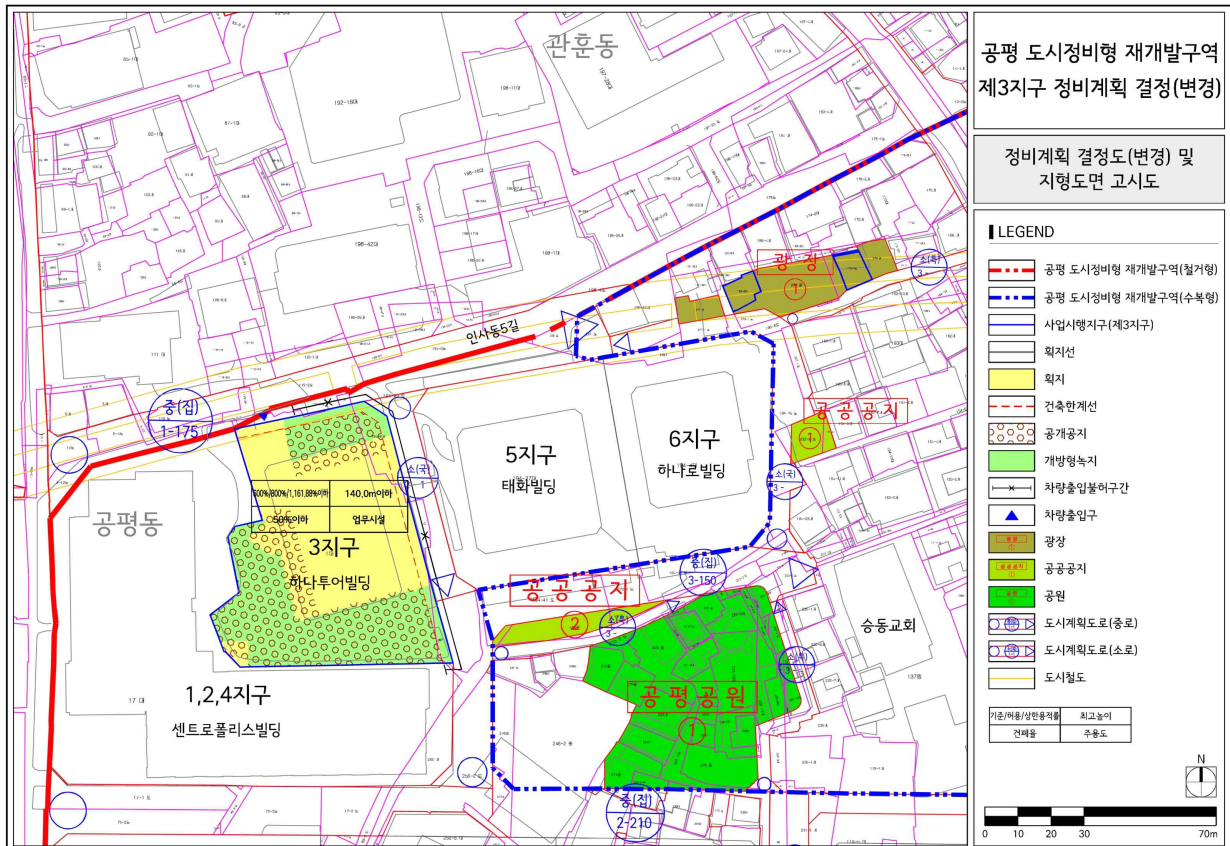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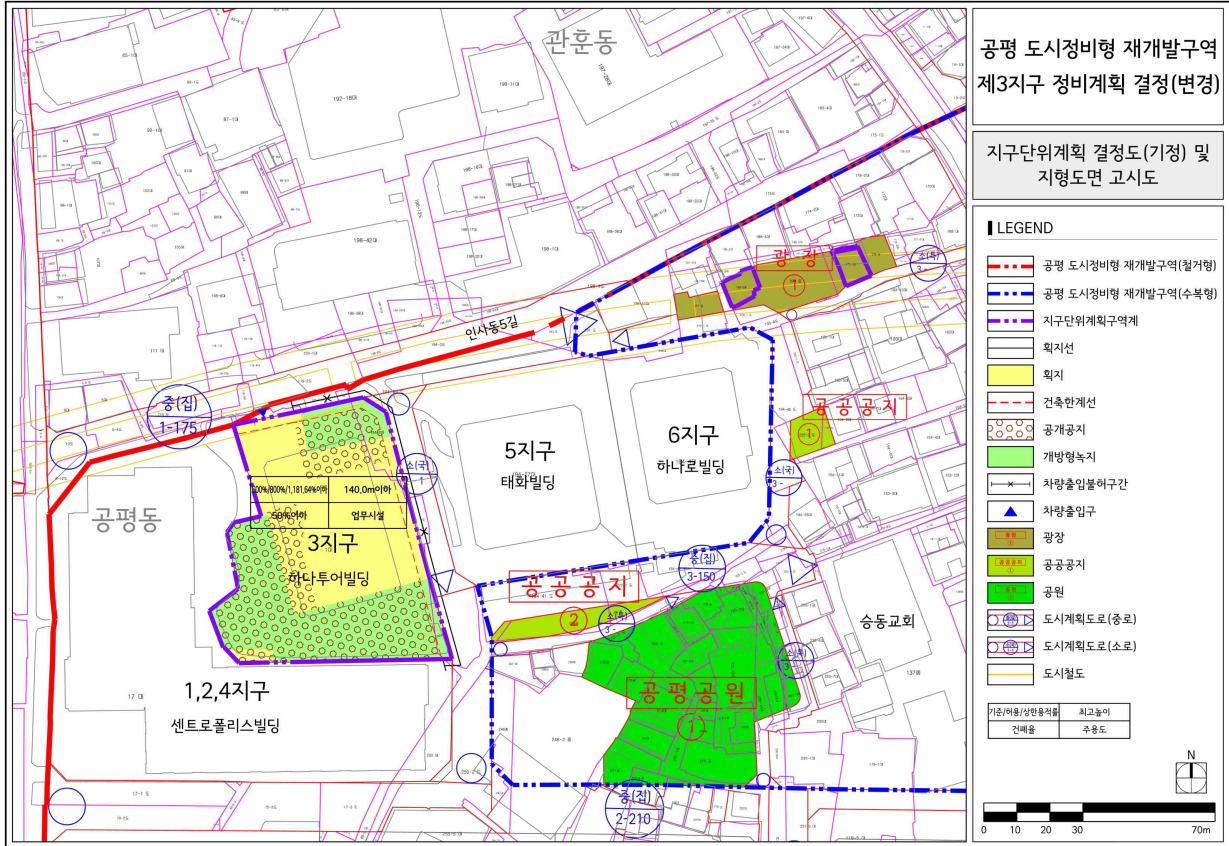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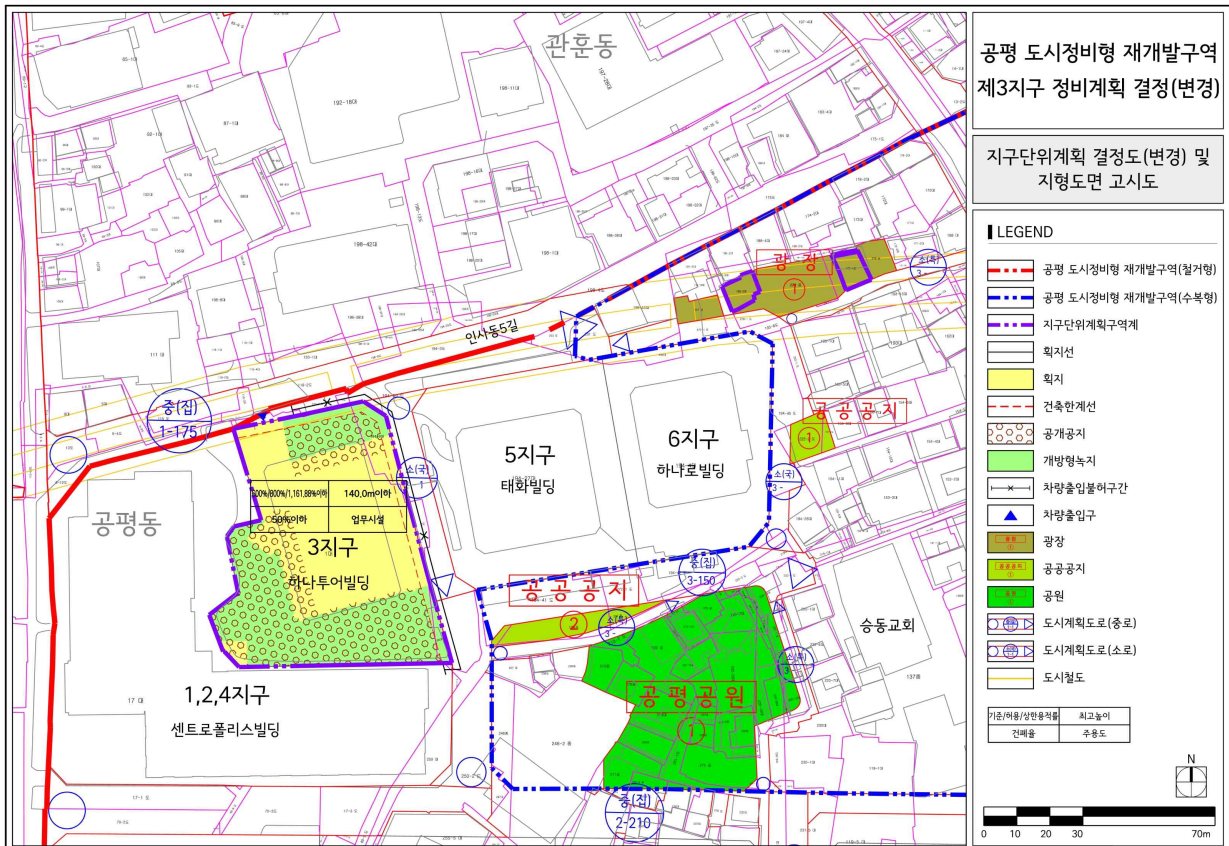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9.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9.(금) ~ 2026. 1. 2.(금)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장소 : 종로구보, 종로구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오○호
	주 소 (대장상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95-237
다. 처분의 원인		건축물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부존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95-237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36.02㎡), 세멘브록조,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가.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